#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748 발의연월일: 2021. 12. 08.

발 의 자:이명수・金炳旭・김상훈

김승수 · 서범수 · 서정숙

이종성 · 이주화 · 장제워

정진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 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현재 5월 23일로 규정 되어 있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세계희귀질환의 날과 동일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여 전세계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사업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3항).
- 나.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함(안 제4조1

항).

다. 희귀질환 진단사업에 미포함된 '유전상담'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유전자 검사 전과 후에 제공하여 진단지원사업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(안 제8조제2항제8호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시행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5월 23일을"을 "2월 마지막 날을"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희귀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한 유전상담 지원
- 9.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12조제1항 중 "진단"을 "예방과 진단"으로 한다.

제20조제2호 중 "진단"을 "예방과 진단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・②	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
	업 시행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
	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제4조(희귀질환 극복의 날) ① 희	제4조(희귀질환 극복의 날) ①
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	
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·치료	
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	
하여 매년 <u>5월 23일을</u> 희귀질	<u>2</u> 월 마지막 날을
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)	제8조(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희귀질환지원센터는 다음	②
각 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	8. 희귀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
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렁으로	관리를 위한 유전상담 지원
정하는 사업	
<u>&lt;신 설&gt;</u>	9.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
	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렁으로
	정하는 사업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의료비 지원 사업) ①	국
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	l환
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	고
려하여 희귀질환의 <u>진단</u> 및	치
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	는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	국
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	수
있다.	

### ② (생 략)

- 제20조(비용의 보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(생략)
  - 2. 희귀질환 <u>진단</u> 및 치료에 소 요되는 비용
  - 3. ~ 6. (생 략)

제12조(의료비 지원 사업) ①
예방과 진단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(비용의 보조) ①
1. (현행과 같음)
2 <u>예방과 진단</u>
3 ~ 6 (현행과 같음)